

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

[시행 2024.09.23]
(제정) 2024.09.23 조례 제2790호

관리책임부서명 : 경제정책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33402059

제8조(고용안정 사업)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채용, 일자리 안정자금 등 재정지원 사업
2.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공제 사업
3. 그 밖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